

## 부속서 II

### 한국의 유보목록

####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한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4조(시장접근)

라. 제10.5조(현지주재)

마. 제9.9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9.13조제2항(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제2항(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 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9.13조제2항(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제2항(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2조(내국민 대우)와 제10.5조(현지주재)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10.5조(현지주재)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제10.2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9.3조)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13854호, 2016.1.27) 제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제5조
유보내용	<p><u>투자</u></p> <p>한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2016) 제4조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7)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한국은 즉시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였다는 서면통지를 하고,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p> <p>가. 「외국인투자 촉진법」(201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7) 및 그 밖의 적용 가능한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p> <p>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p> <p>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p> <p>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p> <p>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한다.</p>

2.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기존의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30호, 2016.3.29) 제168조
유보내용	<p><u>투자</u></p> <p>한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한 조치는 제18장(투명성)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p> <p>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p> <p><b>공기업</b>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p>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상 약속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한국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3. 분야	토지취득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기존의 조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1.19)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농지법(법률 제14242호, 2016.5.29) 제6조
유보내용	<p><u>투자</u></p> <p>한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토지 취득은 계속 허용된다.</p> <p>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p> <p>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외국 법인의 지점인 경우. 다만, 토지는 다음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li> <li>2)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li> <li>3) 해당 법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li> </ol> <p>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4. 분야	총포, 도검, 화약류 및 유사 물품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5. 분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 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 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 분야	국가 소유의 국가 전자/정보 시스템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정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금융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분야	사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 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법 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훈련, 보건, 그리고 보육.



8.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기술된 대로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p> <p>가.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관련 의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해서는,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고 기재한다.</p> <p>나.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 공급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p> <p>다. 부록 II-1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1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p> <p>이러한 변경은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GATS 제16조제2항바호 관련 어떠한 제한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의 제10.5조(현지주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9.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항공</p> <p>나. 수산</p> <p>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또는</p> <p>라. 철도 운송</p> <p>한국은 엘살바도르에 대하여,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대우를 부여하는 통신서비스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b>10. 분야</b>	환경서비스 - 음용수 처리 및 공급 서비스, 생활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스,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한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유보내용</b>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다음의 환경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한다).</p> <p>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과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민간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11. 분야	에너지 - 원자력 에너지, 전기 에너지 및 가스 에너지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원자력 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 및 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와 같이 원자력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한국은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 산업 -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력산업에서의 외국 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p> <p>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9.9조제1항바호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p> <p>한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 산업 - 가스 산업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 산업에서의 외국 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p>

12.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농축산물, 식음료에 대한 중개서비스</li> <li>나. 곡물, 육류, 가금, 곡분, 인삼, 홍삼 및 비료에 대한 도매서비스, 그리고</li> <li>다. 쌀, 인삼 및 홍삼에 대한 소매서비스</li> </ul>

13. 분야	주류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u> 한국은 주류 제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b>14. 분야</b>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택시서비스 및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 도로화물운송서비스(쿠리어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서비스는 제외한다), 내륙수운서비스 및 우주운송서비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 (제9.4 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유보내용</b>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택시서비스 및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현지주재 의무에 대하여,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연안운송은 제외한다)과 쿠리어서비스와 연관된 도로운송서비스를 제외하고, 한국은 도로화물운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내륙수운서비스 및 우주운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5. 분야	운송서비스 - 저장 및 창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농산물 및 축산물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6.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비독점우편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기존의 조치	우편법(법률 제13584호, 2015.12.22) 병역법(법률 제13425호, 2015.7.24)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6085호, 2015.2.3) 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13854호, 2016.1.27) 제4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그 밖의 인이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그 부처에 속하는 차량 정수의 결정과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 한국 우정당국은 국내 및 국외 서신의 수거, 처리 및 배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에 대한 접근과 그 운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17. 분야	커뮤니케이션 -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방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8.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방송 및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 (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기존의 조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4조, 제7조, 제9조, 제18조 및 제21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45호, 2013.3.23) 제20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서비스란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한다)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과 양방향 방송을 포함한다.

<b>19. 분야</b>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b>관련의무</b>	최혜국 대우 (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b>정부수준</b>	중앙
<b>기존의 조치</b>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02호, 2013.7.16)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5호, 2008.12.31)
<b>유보내용</b>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공동제작 약정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 내국민 지위를 부여한다.

<b>20. 분야</b>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b>정부수준</b>	중앙
<b>기존의 조치</b>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02호, 2013.7.16) 제27조 및 제4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036호, 2012.8.13) 제10조 및 제1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8호, 2012.8.17)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5호, 2008.12.31)
<b>유보내용</b>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한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b>21. 분야</b>	사업서비스 - 부동산서비스(부동산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유보내용</b>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개발, 공급, 관리, 판매 및 임대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2. 분야	사업서비스 - 지적 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지적 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b>23. 분야</b>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 인증 및 등급 판정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유보내용</b>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 인증 및 등급 판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b>24. 분야</b>	사업서비스 -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유보내용</b>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유전적 개량, 인공 수정, 벼 및 보리 도정,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활동 등을 포함한 농업, 임업 및 축산업 부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한국은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25. 분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u> 한국은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6. 분야	신문 발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기존의 조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2151호, 2010.5.4)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7. 분야	교육서비스 –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및 그 밖의 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유아·초등 및 중등교육, 의료 및 보건 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 및 중등교원 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 교육(학점, 졸업장 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성인교육 서비스는 제외한다), 그리고 그 밖의 교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b>28. 분야</b>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유보내용</b>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b>29. 분야</b>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영화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박물관 및 그 밖의 문화 서비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기존의 조치</b>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02호, 2013.7.16)</p>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036호, 2012.8.13)</p> <p>문화재보호법(법률 제11228호, 2012.1.26)</p> <p>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62호, 2012.6.19)</p> <p>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82호, 2011.7.21)</p> <p>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호, 2011.2.16)</p> <p>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30호, 2012.12.11)</p>
<b>유보내용</b>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및 현지주재 의무에 대하여,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한국은 내국민 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현지주재 의무에 대하여,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30. 분야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u> 한국은 농어촌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b>31. 분야</b>	도박 및 베팅 서비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기존의 조치</b>	관광진흥법(법률 제12406호, 2014.3.11) 제5조, 제21조 및 제28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154호, 2014.1.1) 제11조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2348호, 2014.1.28)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11호, 2014.7.28) 제28조 및 제30조 한국마사회법(법률 제14306호, 2016.12.2) 제3조 및 제48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43호, 2015.2.3) 제6조 경륜·경정법(법률 제12688호, 2014.5.28) 제4조, 제19조 및 제24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98호, 2013.8.6) 제2조, 제21조 및 제2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b>유보내용</b>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은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사행성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대로, “사행성게임물”은 특히 베팅을 통하거나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게임기기를 포함한다.



32. 분야	외국전문직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외국 공인회계사 및 외국 세무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현지주재 의무에 대하여,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한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 승인, 등록, 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요건에 대한 제한</p> <p>나.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변호사, 한국 법무회사(로펌),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 상사연합, 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p> <p>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내에서 한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p> <p>라. 외국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p> <p>제1항에도 불구하고,</p> <p>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다른 쪽 당사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협정의 다른 쪽 당사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대하여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p> <p>나.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한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p>

	<p style="text-align: center;">연계 되는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p> <p>한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자국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b>다른 쪽 당사국 법무회사(로펌)</b>란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다른 쪽 당사국 내에 위치한 법무회사(로펌)를 말한다.</p> <p>한국은 회계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국내적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한 외국공인회계사의 사무소는 한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p> <p>내국민 대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현지주재, 그리고 최혜국 대우 의무에 대하여, 한국은 소유권, 파트너십, 임원 및 이사의 국적 및 서비스 제공 범위를 포함하여 세무사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서 세무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국내적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한 외국 세무사의 사무소는 한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p>
--	--

33. 분야	사업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한국에 거주하는 인만이 그러한 물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p>

34. 분야	운송 서비스 -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한국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여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p> <p>연안해상운송은 한국 선박을 위해 유보된다. 연안해상운송은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간 해상운송을 포함한다. <b>한국 선박</b>이란 다음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한국 정부, 공기업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 소유한 선박</li> <li>나. 한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li> <li>다. 한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li> <li>라.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가 한국 국민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li> </ul>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항 항만활동에 관한 조치는 제23.2조(필수적 안보)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p>

부록 II-1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 접근 개선사항
<p>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자연과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사회과학과 인문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학제 간 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정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시장조사 및 대중여론조사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광업 부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포장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컨벤션대행서비스 이외의 컨벤션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p>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p>	
분야/하위분야	시장 접근 개선사항
빌딩청소서비스(CPC 874*, 다만 87409 제외)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환경자문서비스(CPC 9409*)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p><b>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b></p> <p>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제공서비스 철도 및 항공운송 관련 시설의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제공서비스 제외</p> <p>여행대행서비스</p> <p>관광객안내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오직 여행사만이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된다”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
<p>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p> <p>기타 - 게임서비스(CPC 964**)</p>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 접근 개선사항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